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8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조정훈·최수진·김대식

정성국 · 김소희 · 서지영

인요한 · 김용태 · 최형두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,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한국보육진흥원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 한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,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된 상황임

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,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'보육'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포괄하는 종합적인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'한국보육진흥원'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·유아교육·양육·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

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,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제8조 등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중 "한국보육진흥원"을 "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보육서비스"를 "영유아교육·보육서비스"로, "보육정책"을 "영유아 중심의 교육·보육정책"으로, "한국보육진흥원"을 "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"를 "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"로 한다.

- 1. 영유아의 교육 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분석
- 2. 유치원,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·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
- 3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·운영에 관한 업무
- 4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·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
- 5.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심리ㆍ건강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

- 6.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
- 7. 영유아 교육ㆍ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
- 8.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
- 9.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
- 10.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 단 운영의 지원,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 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
- 11.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
- 12.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
- 13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 감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했

제8조(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 국보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 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(생략)

- 1.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 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
- 2.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 원
- 3.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 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
- 4.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 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 괄 관리 및 지원
- 5.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 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, 제3

개 정 안

제8조(한국영유아교육 • 보육진흥원 의 설립 및 운영) ① 영유아 교 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 육 ·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 ·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교육・ 보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1. 영유아의 교육·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· 분석
- 2. 유치원,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·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
- 3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 체계 마련 · 운영에 관한 업 무
- 4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 에 관한 업무
- 5. 영유아의 신체・정서・심리・건강

- 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•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 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 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 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
- 6.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 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
- 7.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 업의 지원
- 8.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
- 9.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- 6.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
- 7. 영유아 교육 · 보육 관련 교 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
- 8.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 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
- 9.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 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 괄 관리 및 지원
- 10.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 원,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 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 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 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 리 지원
- 11.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 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
- 12.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 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

- ③ ④ (생 략)
- ⑤
 교육부장관은
 진흥원의
 운

 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

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⑥·⑦ (생 략)

- 13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,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(5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⑥·⑦ (현행과 같음)